

제262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19. 2. 2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미래·복지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19년 2월 21일  
전문위원 안 은 희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19 - 2
- 나. 제출자 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19년 1월 31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2월 13일

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사업 추진 단체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폭 넓은 사업 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명칭 정비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→ 성별영향평가
- 나. 재정 지원 가능 단체 범위 조정
  - 관내 소재 단체 →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
- 다.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2조제1호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12. 12.~1. 2.) 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평가 : 제외 대상

## 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,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상위법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이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개정되며 제명과 용어가 ‘성별영향평가’로 변경<sup>1)</sup>됨에 따라, 조례상 사용 용어를 수정하고,
- 안 제28조의 행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단체 중 장소적 요건(관내 소재)을 삭제하며, 내용적 요건(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)을 추가함.
-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함.

---

1) 개정이유 :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,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2018년 9월 28일 개정·시행된 「성별영향평가법」의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양성평등사업 추진 단체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 상위법 위반 등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**□ 성별영향평가법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3. 27.>

1. "성별영향평가"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